

참고

‘15년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요약

□ 시행기간 : ‘15.6.29.(월) ~ ‘15.8.28.(금) (9주간)

-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, 냉방온도 제한(민간 권고, 공공 의무)을 실시

* 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‘15.7.6.(월)부터 적용

구 분	제한대상	제외대상	제한내용
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*15.7.6.부터 과태료	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, 상가, 건물 등	냉방기 미설치 사업장, 지하도 상가 등	·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	공공기관 (2만여개소)	학교, 도서관, 민원실, 의료 기관, 전시실, 대중교통시설 등	·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℃이상 유지(단, 가스냉방, 지역냉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6℃이하 유지)
민간부문 냉방온도 (권장사항)	계약전력 1백kw 이상 (약 8.8만여개소)	공동주택, 사회 복지시설, 강의실, 숙박시설, 공연장, 전시장, 회의장 등	· 피크시간대(10~12시, 14~ 17시) 실내온도 26℃이상 유지(단, 토, 일, 공휴일 제외)